[서식 예] 양수금청구의 소(약정금채권의 양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게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 ◈는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20○○. ○○. ○○. ○ 리 3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로부터 20○○. ○. ○○. 소외 ◈◈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약정금채권을, 원고가 소외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조건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수 받았고 같은 날 소외 ◈◈◈가 위와 같은 약정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서

는 같은 달 12.자로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있습니다.

- 2.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는 위 양수 받은 채권의 변제기일 전에 피로 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기일에 원고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수채권 변제기일의 다음날인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1. 갑 제2호증

1. 갑 제3호증

1. 갑 제4호증

1. 갑 제5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약정금지불각서

변제최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소장부본

1. 송달료납부서

각 1통

1통

1통

 2000.
 0.
 0.

 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

			Sorker Corker And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Manager of the latter of th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불복절차 및 기 간 기 타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남기준표) ・ 황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법 제450조).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인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중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판결) ・ 엄대차보증급 반환채권의 지문권자로부터 그 지문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송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변범 부칙(1958.2.22.)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봅(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관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것이지 채무면제에 같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이 소면한다고 불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면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모서 채권와 양도한 상도인은 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 약도만의 장로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 양도단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함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